경기도 사회복지 G-방역+ 운영매뉴얼

- 총괄편 -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목차

제 I 장 개요

1. 목 적 ····· 1
2. 활용방법 ····· 2
3. 적용범위 ····· 2

제 II 장 감염병의 이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이해 ····· 3
2. 사회적거리두기 현황 ····· 5

제III장 시설 방역 매뉴얼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대응조치 ····· 7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 9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17
4. 접촉의 최소화 :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18
5. 시설 휴관(원) 시 조치 및 재개 시점 ····· 19
6.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 23
7.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 26

제IV장 주체별 역할

1. 시설운영자의 역할 ····· 29
2. 감염병 전담 관리자의 역할 ····· 30
3. 종사자 보호하기 ····· 3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

제 Ⅰ 장
개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함**

○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시행, 감염차단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자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5.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23~)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30~)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한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속·유지 시키고자 함

□ **본 매뉴얼은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방역 연계 사회복지서비스 방역 운영의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여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기본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하여 제시함

2. 활용방법

□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이외에 시설·서비스에 따른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여 복지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활용함

□ 본 매뉴얼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1장. 개요
-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방법

2장. 감염병의 이해
- 코로나19 이해와 사회적거리두기 기준

3장. 시설 방역 운영 매뉴얼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대응조치
- 감염예방, 접촉의 최소화 등 대응조치
- 감염의심자,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조치
- 시설 휴관 조치 및 재개절차

4장. 주체별 역할
- 시설운영자의 역할
- 감염병전담 관리자의 역할
- 종사자 보호

3. 적용범위

□ 이용자의 특성과 사업진행 시 요구사항에 따른 유형별 세부 매뉴얼을 추가 제공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공통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가(돌봄)서비스 등

제 Ⅱ 장
감염병의 이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이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며 새롭게 발견된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
- SARS-CoV-2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사스(SARS-CoV)나 메르스(MERS-CoV)와는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

○ 정식 명칭은 코로나19(코로나일구)로 해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COVID-19(Corona Virus Disease 19)으로 불림
- 병명에 붙은 '19'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이 보고된 2019년을 의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치료법은?
  현재까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치료제나 예방 백신은 없으며 감염초기에 증상은 심각하지 않지만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와 같은 취약집단은 특히 위험할 수 있음

자주하는 Q & A[1)]

Q : 지역사회감염은 무엇인가요?

A : 지역사회 감염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였지만 발생 지역 방문이나 확진자와 접촉력 없이, 언제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임

Q : 음식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19가 전염될 수 있나요?

A : ·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음식을 통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음

·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의 포장 용기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자신의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만, 물체의 표면에서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음

·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에 비누와 물로 30초 동안 손을 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Q :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나요?

A : ·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저온의 건조한 환경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존 기간이 더 짧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온도와 관련된 자료와 바이러스 비활성화에 관련된 온도 정보는 아직까지 부족함

· 제한적이지만, 위도, 온도, 습도에 따른 코로나19의 분포 양상이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의 양상과 비슷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음

Q : 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A : 코로나 19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생활자, 기저질환(만성 폐질환, 천식, 심폐질환, 면역억제자,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흡연자 등)을 가진 사람들은 더 위험할 수 있음

2. 사회적거리두기 현황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행동요령으로 개인방역에 중요한 역할

- 기본수칙 :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보조수칙 :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소독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직 지키기 ④ 건강한 생활습관

○ 단계별 전환 지표 및 조치사항[2)]

[표 Ⅱ-1]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

구분(최근 2주간)	1단계	2단계	3단계
일일확진자수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이상 1주2회 일일확진환자 2배증가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비율	5%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 발생현황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이상	-	-

[표 Ⅱ-2]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가 2단계(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간	~2020.8.15.	2020.8.16.~2020.9.6.	2020.9.7.~2020.9.13	-
적용지역	-	비수도권	수도권	-
일상생활	방역수칙준수허용	50~100명 집합금지	10명이상 집합금지	10명이상 집합금지
[민간] 다중 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허용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제한조치(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음식점 등은 방역수칙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교습소(10인미만) 및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조치	운영제한·금지
		이용자제 권고	·일반음식점, 제과점등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공공] 다중이용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공공] 기관,기업	재택근무권고	유연·재택근무확대	유연 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제한	최대한 재택
학교	등교·원격수업병행	등교인원 축소, 밀집도 최소화 조치(1/3내 등교)	원격수업 전환	원격수업전환
목표	일상적사회경제활동 의료체계감당수준 통제	1단계수준으로 환자추이감소		급격한 유행확산차단 통제력 회복

[그림 Ⅱ-1]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비교[3)]



제 Ⅲ 장

시설 방역 매뉴얼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대응조치

□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감염관리체계 역할

ㅇ 지자체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에 대한 계획수립 및 운영 안내

- 감염병 대응 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 안내, 휴관 및 일시 폐쇄 시 업무 안내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속한 정보 제공
- 감염병 대응·예방 과정에서 종사자 부족 문제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대체인력 수급 계획 수립 등 적절한 대응책 마련
- 시설 휴관·일시 폐쇄와 관련 시설 현장과의 협의, 기준제시 및 일상복구 관련 지원

ㅇ 보건소·병원은 환자뿐 아니라 감염에 취약한 종사자 및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원칙 준수와 안내

- 모든 보건소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접촉자에 대한 선별진료 및 검사 방안마련
- 취약계층 코로나 확진 시 유형별 대처방안 마련
- 시설 문의 시 유증상자(의심환자)에 대한 기준 정확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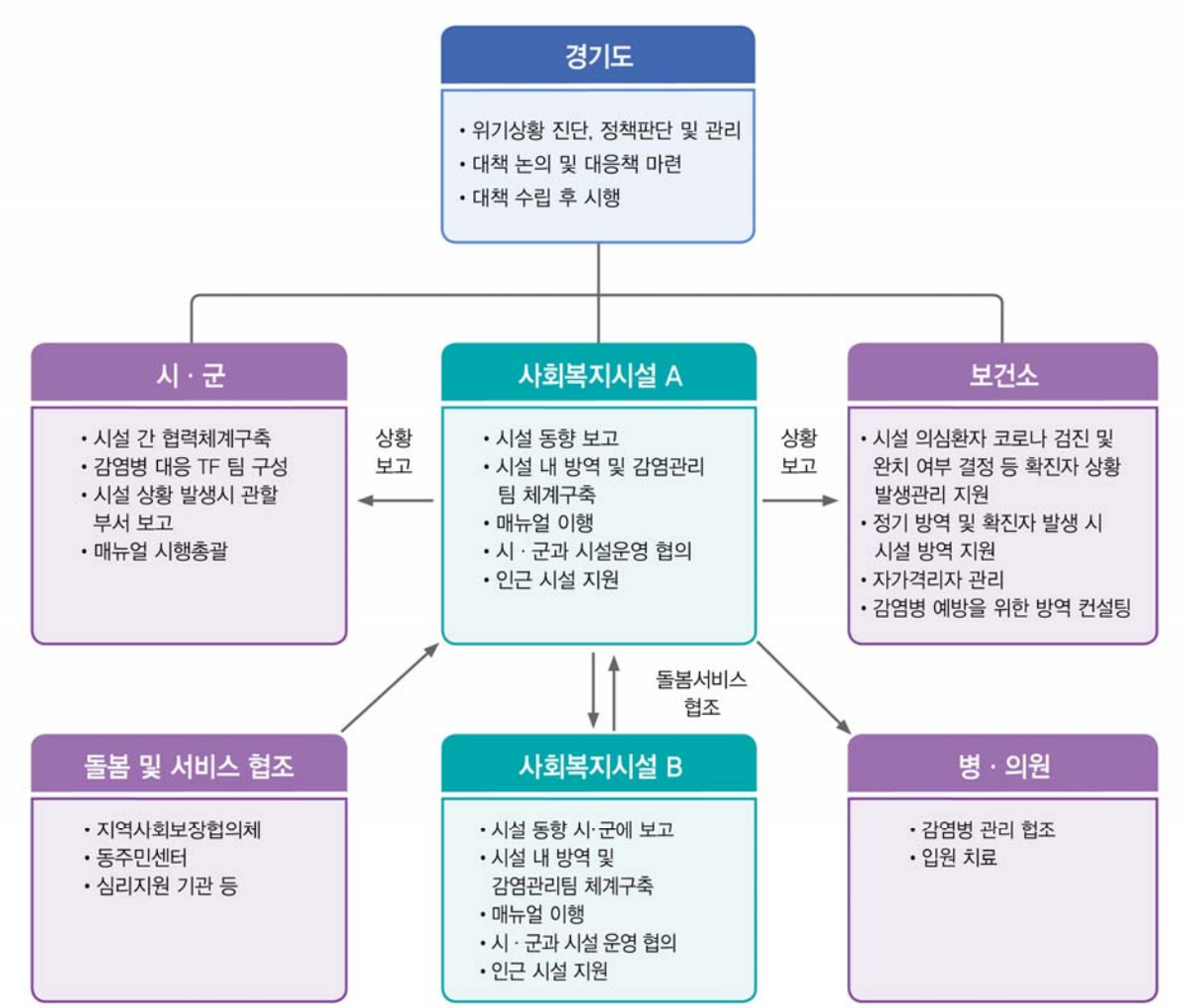
ㅇ 사회복지시설은 감염관리와 방역관리팀 또는 담당자를 지정관리·운영함

- 이용자·종사자 등의 증상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출입통제, 시설 내 방역관리 물품 비치와 체크
- 시설 실내의 밀폐도, 인구 밀집도, 업무방식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와 개선
-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와 비상연락망 구축
- 평상시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보다 한층 세분화된 방안 마련
- 격리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보호자의 격리와 같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요보호 대상자에게 긴급돌봄 지원

□ 지자체 및 사회복지 시설의 감염관리체계 구성도

○ 시·군과 사회복지시설, 보건소는 상시 연락망 구축 및 주기적인 상황전달

[그림 III-1]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감염관리체계도[4)]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5)]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누구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함[6)]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출근(입소)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 씻기
- 하지 말아야 할 일
  ①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인후통 등)이 있을 때 출근(입소)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
  ③ 컵, 필기도구, 수건 등 개인용품을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ㅇ 시설 내 주요 공간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

- 이용자 및 종사자 입소 전, 이용 중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고, 기상상황, 주변여건을 등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화장실*창문 포함) 상시 개방
  * 화장실에 환기용 팬(fa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창문을 닫고 팬을 가동

- 환기가 가능한 장소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 실시(최소 6회, 1일 최소 2시간 이상)[6]
-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를 낮춰서 사용

ㅇ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고, 만약 기침시 휴지를 사용했다면 바로 버릴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비치
-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이 시설 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
- 일회용 비닐봉투 등을 비치하여 기침시 활용한 휴지는 밀봉하여 버림

ㅇ 시설 내, 운행버스, 생활공간 등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화장실(수도꼭지, 변기, 문고리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자주 소독
-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닦도록 매일 안내

ㅇ 보건용 마스크[1],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
- (체온계) 각 사무실 1개, 프로그램실 1개, 운행차량 1개
  (보건용 마스크) 이용자 1명당 2장(아동용포함, 공적물량 배정, 자체비치)
  (손소독제, 500ml 기준) 각 사무실 1개, 식당 2개
  (소독제, 알콜 티슈)는 각 사무실, 프로그램실, 식당에 충분량을 비치
- 일반마스크(또는 면마스크)는 이용자 1명당 2장 이상 확보
- 방역물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비치 장소는 사무실 또는 보건실 등 시설 여건에 맞게 조정

---

1) • N95 마스크
- 보통 마스크와는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호흡기'에 속함
- 95는 공기에 떠다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미세과립의 95% 이상을 걸러 준다는 의미

• KF94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거친 마스크
-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94% 차단
- 황사, 미세먼지는 물론 전염성 질병까지 차단 가능하지만 차단율이 높을수록 숨쉬기 어려우므로 노약자 등은 호흡량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야 함

[그림 III-2]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환경소독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② 환경 소독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 환경 소독 >

①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 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1,000ppm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5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 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5ml 를 붓고 (예, 생수통 1/2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 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10ml 를 붓고 (예, 생수통 1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균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②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③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 · 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2020.4.2.기준 [제3-1판]) 을 참조하세요.

자주하는 Q & A

Q : 청소만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나요?

A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적어도 2~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생존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염된 표면은 사람이 이러한 표면과 직접 접촉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음

·청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않지만 닦아낼 수는 있으므로 병원체의 수가 줄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인해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생각되면 청소하고 소독하면 표면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음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함

Q : 일상 청소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일상 청소나 소독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함

·일상 소독은 시설별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인 소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참고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이용시설 개방 전 모든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여부 확인, 폐렴검진 등)를 확인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정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실시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생활시설 내 화장실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 충분히 비치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공용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 마련 및 적용[7)]

* 문을 열어 환기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시행
* 격리실 운영 관리
* 모든 사람이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원 제한
*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마주침이 최소화되도록 동선 변경
* 레크레이션 구역의 이용을 제한하고 공간 폐쇄 고려

□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8)]

○ 체온을 측정하는 시기

- 운동 및 샤워 후, 먹고 마신 후나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30분 정도 경과한 후 측정

[그림 III-3] 체온계 유형별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 귓속형(고막)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정확한 온도 측정은 귀를 뒤로 당겨 일직선이 되어야함 가능
-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측정 대상자마다 새로운 필터로 교환 사용하거나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

  ※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사용하면 중이염 등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귀가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 사용 불가
- 귀지가 많거나 외이도가 작은 경우, 귀 감염이 있는 경우 등은 온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아동이 몸부림을 칠 경우 피부와 센서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시킨 후 측정

ㅇ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센서를 이마 중앙에 오게 하고, 기기를 2~3cm 떨어뜨려야 정확한 수치가 나타남
- 이마에 땀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땀을 닦고 측정

ㅇ 기타사항

-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정상 체온은 36.1℃ ~ 37.2℃이며, 평균 정상 체온은 37.0℃
- 신진 대사율이 높은 아이들의 체온이 높아지는 경향
- 배란중인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0.5℃ 높아질 수 있음
- 65세 이상 성인은 대사율이 낮아 체온이 0.3℃ 더 낮을 수 있음
- 체온은 잠을 자는 오전 3시에 가장 낮고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오후 6시에 가장 높음
- 정확한 판독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음

□ 입소거주인 및 방문객 관리 강화

ㅇ 생활시설 입소거주인은 매일 2회 발열검사 추가 실시

- 기상 후 아침식사 전, 취침을 위한 입실 전

ㅇ 매일 모니터링

- 모든 생활인은 1일 2회 체온 측정 및 변화 관찰
- 질환이 있는 생활인은 1일 3회 이상 관찰
- 특이사항에 대한 파악과 기록 철저

ㅇ 외출

- 외래진료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유관기관 및 교통서비스 제공자와 생활인의 건강상태를 공유

ㅇ 식사

- 공동식사는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식사하되 부득이 한 경우 식당은 거리두기 실천
- 시간별 인원 수 제한 입장
- 배식 직원들의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주방 및 조리 공간 활용한 프로그램 금지

ㅇ 프로그램 활동

- 시설 내 생활인 이동 최소화 및 집단 활동 자제
- 프로그램 활동 시 철저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가 가능한 10명 이하로 제한된 인원의 증상이 없는 생활인의 비활동성 프로그램

ㅇ 보호자 또는 방문자의 숙소 출입을 제한

-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자 방명록 작성
- 출입구에 시설 방문자 스크리닝 스테이션 설치 (증상과 징후 감염병 노출 여부 질문지)
-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불가(예방수칙 안내와 마스크 제공)
- 불가피한 면회 시 면회자는 생활인당 1인 이내로 제한, 짧은 시간 이내에 면회 종료
- 생활인과 외부방문자 공동식사 금지

□ 재가(돌봄)서비스의 대응[9)]

ㅇ 예방 수칙, 증상 발현 시 행동수칙은 일반 대국민 지침과 동일 적용

- 이용자, 이용자 동거 가구원, 제공인력 등의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공통 지침으로 준용함
-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격리 조치된 경우 가족돌봄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장애인활동지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로 인정
- 1인 가구 등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이용자에게는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활동지원 등 필수 서비스 이용 지원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되면 음성판정까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고 민간 자원 및 지자체 긴급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조치

[그림 III-4] 개인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10)]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 · 입소자 · 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붙임 1)

ㅇ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1)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1)+(2): 유증상자 코로나19 행동수칙 참조),

(3)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보건소(☎1339,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진료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ㅇ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 시 출석 인정

ㅇ 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것

ㅇ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ㅇ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 공간*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시설 입소자의 면회 · 외출 · 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SMS, 전화 등)

- ㅇ 면회 허용 시기는 시설별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정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시설별로 면회 수칙 등을 별도 마련 · 운영
- ㅇ 외출은 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입소자는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 · 운영
  - 면회, 외출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이용자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 ㅇ 자원봉사자 ·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 ㅇ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 · 기록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 출입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 ㅇ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 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4. 접촉의 최소화 :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ㅇ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ㅇ 출 · 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ㅇ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ㅇ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 휴게실 등에서 다과 및 점심 식사 같이 먹지 않기
- ㅇ 집단 행사, 집합교육, 국외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소규모회의, 국내출장 등 가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5. 시설 휴관(원) 시 조치 및 재개 시점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유지 방안 마련·운영

※ 아동(도시락, 식사지원 등), 노인(안부전화, 도시락 등), 장애인(활동지원) 등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지침」('20.2.21.旣 배포) 및 시설별 개별지침 활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1('20.02.21.) 旣 시행

□ 방문돌봄서비스 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 서비스의 대응과 관계 참고[11)]

○ 재가서비스 제공 시 코로나19 확산 대응 지침 준수

- 예방수칙, 증상 발현 시 행동 수칙 등 일반사항은 대국민 지침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
-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일일 현황 모니터링 강화, 서비스 제공인력 대상 위생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을 구입하여 지원

○ 재가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이 코로나 평시 감염병 발생 보고 체계가 미비한 영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안내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군 및 노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비상연락망을 안내

○ 서비스 이용자가 감염병이 있는 경우 가족에 의한 돌봄을 허용

- 방문돌봄 서비스에서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으나, 이용자가 감염병 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애인활동지원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음

○ 격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이용자, 이용자 동거 가구원, 제공 인력 등의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공통지침을 준용하도록 함
-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격리 조치된 경우에는 가족 돌봄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이용

○ 서비스 이용자가 자가격리되어 기존의 방문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에 의한 돌봄사례로 인정, 돌봄 인력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존에 제공 인력파견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인정되던 가족 및 이웃에 의한 돌봄 제공을 지역제한 없이 격리 대상자로 확대하고,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확대
- 1인 가구 등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서비스, 활동지원 등 필요 서비스 이용지원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자가 격리 또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음성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고 민간자원 및 지자체 긴급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조치하도록 안내

□ 기존 사업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주 보호자의 격리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요보호 대상자에게 일시 긴급돌봄을 지원

○ 기존 사업의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방식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주 보호자의 퇴원 또는 격리 해제일까지 긴급돌봄 지원

○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아이돌보미,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기존 사업과 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지원

-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격리 대상자 가구 중 자택에 남아 있는 노인의 서비스 필요 여부를 파악하여 안부확인 또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자체에 요청

□ (운영 재개 시점 등) ① 각 시설별 운영재개 사전준비사항에 따른 약 2주간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② 지자체별로 개별시설의 사전준비사항 점검 종료 후 운영 재개 시점 판단(결정)

○ **(운영 재개前)** 시설 휴관(원) 시 조치사항에 따라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유지

○ **(운영 재개後)** 시설별로 이용수칙 및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운영

- 감염예방과 모니터링, 시설 운영 등과 관련 각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명시
- 운영재개에 대비한 종사자 교육·훈련 시행
- 시설 내 거리두기, 동선 분리, 위생 강화, 비상시 대응 등 시설 운영계획에 관한 논의 진행
- 서비스 제공 지속이 시급한 이용자 집단, 프로그램 등 우선순위와 운영재개의 수준 논의

◈ 운영재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 **(1단계) 비대면 서비스, 소규모(10명 이내) 실외 프로그램 운영 등**
  - 부분운영 = 1:1 개별프로그램 등 진행
  - 운영 축소 완화 = 소규모 그룹 프로그램 진행
  - 10명 미만 운영방안(격일 이용, 주5일 2부제(오전/오후), 시간대별 단축 및 분산
  - 외부인 방문제한
- **(2단계) 운영재개 2주 후 운영 프로그램 확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가능한 소규모(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 등**
  - 외부인 방문제한
- **(3단계) 위기경보 수준 '심각'→'경계' 조정 후, 시설 정상운영(경로식당 등 운영),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전체 프로그램 운영재개
  - 외부인 방문 허용
  - 대규모 프로그램 및 야외 단체행사 자제

※ 중규모(30인) 이상의 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조건

○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의 원칙

◈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의 원칙

- 운영재개의 선행조건
  - 중앙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원칙을 2주 이상 유지하고 활동을 재개하기로 발표
  - 지역에서 초·중·고등학생의 등교에 대해 문제없음을 발표
  -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규 확진자 발생 비율이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생활시설의 운영재개를 검토하고 발표

○ 이용시설 단계별 운영방안[12)]

- 1단계 : 비접촉성(비활동성) 프로그램 운영(노인복지관, 경로당 제외)

[표 III-1] 시설유형별 1단계 운영방안

구분	1단계	내용
이용시설	일부운영	- 일반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는 소규모(10명 이내)는 실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적정인원으로 책상 간격을 유지하여 운영 - 온라인 운영, 격주수업, 단축수업 등 운영다양화 - 식당은 무료급식 어르신, 시설이용 장애인 대상으로 제한적 운영, 시간제·비대면·교차, 거리유지, 칸막이 설치등 - 돌봄센터 등 기본 돌봄은 운영
어르신 이용시설	일부운영	-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현재 시설 이용자의 70%가 긴급돌봄 형태로 시설 이용 중인 운영형태 당분간 유지 - 노인복지관, 경로당은 휴관
장애인 이용시설	일부운영	- 시설 이용정원 50% 수준으로 이용시간과 대상 조정하여 운영 - 장애인 재활체육시설 : 이용자 거리두기, 운영시간 단축 및 조정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시설과 근로장애인 수요 파악 후 전환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기저질환이 있는 이용자는 제한을 두고 단계적 운영

- 2단계 : 중규모 참여프로그램 확대(경로당 제외), 노인복지관 운영

[표 III-2] 시설유형별 2단계 운영방안

구분	2단계	내용
지역 이용시설	확대운영	- 비접촉성(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 사회체육프로그램(헬스장, 에어로빅, 수영장)과 중규모 이상 프로그램까지 확대운영
어르신 이용시설	정상운영	-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 복지관별로 여건에 맞게 이용 인원 제한 및 일부 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 시행 - 경로식당 : 무료급식 대상자에 한해 부분적 운영: 인원제한, 테이블 아크릴판 설치, 한 방향 앉기, 시간차 식사, 일회용 장갑 이용 등 -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 정상운영, 정부 생활방역 지침 준수, 대규모(야외)프로그램 운영 금지 등 - 노인복지관 일부운영, 경로당 휴관
장애인 이용시설	일부운영	- 시설 이용정원 75% 수준으로 이용시간과 대상 조정하여 운영 - 장애인 재활체육시설 : 정원의 50% → 75%로 확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정원의 50% → 75%로 확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수요조사 후 매일 운영 전환

- 3단계: 제한적 정상운영

[표 III-3] 시설유형별 3단계 운영방안

구분	내용
지역 이용시설	- 정상운영 및 경로당 개관 - 경로식당: 운영 확대(무료급식 대상자→일반 어르신까지) - 대규모(100명 이상) 프로그램 및 야외 단체 행사 금지(단, 관리기관 승인 후 운영가능)
어르신 이용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2) 생활시설

- 생활시설은 일반 시민 이용시설은 물론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정상운영으로 전환된 이후 최종 안전상황 확인을 거친 생활방역 전환 마지막단계에 시설 출입제한 완화

[표 III-4] 생활시설 운영방안

생활시설	
기존	완화
시설 출입 엄격 통제	감염위험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뒤, 시설 출입 통제 완화

6.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생활시설 내 임상증상이 있는 이용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증상을 재확인

- 보호자와 행정당국에 연락 후 119로 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시설 거주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시설 내 대기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시설운영 정상복귀
-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검사결과 음성인 사람은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검사결과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확진환자 이용장소(공간)는 방역조치(일시적 이용제한, 소독 등) 실시

- 거주생활 이용자의 거취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ㅇ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ㅇ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 위생 철저히 준수

ㅇ 임시 격리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군(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입소자가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ㅇ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 소독

ㅇ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 · 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단,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 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 위생 철저히 준수

◈ 코로나19 용어정의[13)]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수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자주하는 Q & A

Q : 의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 : 의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임

Q : 의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A : · 의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 감염병 발생정보 → 비고란에 의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입력

· 신고된 사례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여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해야함

※ 의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7.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확진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을 실시

○ 이용시설 내 확진환자 발생 시 모든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귀가조치 후 원격근무 체제로 전환
- 확진환자는 보건당국 격리해제 할 때까지 외부활동 또는 출근 중지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제외한 이용자 및 종사자는 출근재개
- 확진환자와 접촉한 이용자 및 종사자는 격리통지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외부활동·출근중지)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어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전담관리인은 해당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상태(건강상태, 확진 검사 유무 및 결과) 관리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인접시설로의 방문이나 시설물 이용은 지리적 거리, 기관이용 중첩 등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판단

○ 시설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시설장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 금지, 시설내 이동제한 등의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조[14)]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실시

○ 생활시설은 시설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체제로 전환[15)]
- 예방적 코호트 격리 : 노인·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 외부감염원이 유입할 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감염자가 없는 시설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선제적 격리조치

- 코호트 격리 : 집단시설 내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이 시설 바깥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 환자의 접촉자, 의료진 등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해당 시설이나 특정 공간에 격리하는 조치

- 코호트 격리 시 고려사항
  - 격리에 참여할 종사자 확정: 규모 및 특성에 따른 참여 필수 인원수와 가용 인원 수, 격리해제 이후 교대하여 일할 종사자 수 등 판단
  - 격리에 참여하는 종사자 휴식 공간 및 보상 등의 노동권 보장
  - 격리기간(14일) 및 격리해제 후 확진자 발생 시의 재격리 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
  - 현 시설 위치에서 격리가 어려운 시설(예: 한층만 사용하거나 여타 일반거주시설 밀집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 대한 고려

- 코호트 격리 시 원칙
  - 감염예방 및 관리는 치료 위험 평가, 손 위생, 적절한 개인보호구 사용 및 적절한 환경·청소 지침을 준수
  - 각 환자 공간을 1인 병실로 취급
  - 방에 있는 다른 환자를 돌보기 전에 손 위생 절처
  - 환자 침대를 최소 2미터 간격으로 배치
  - 격리공간을 위한 커튼 또는 휴대용 스크린을 사용하여 침대 간 가벽을 만들어 격리된 공간은 별도의 공간인 것처럼 취급
  - 가능한 경우 환자 치료 품목과 장비를 격리된 각 환자에게 제공
  - 격리 환자가 전실, 전원 혹은 퇴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격리했던 구역 청소

자주하는 Q & A

Q : 공동격리(코호트 격리)란 무엇입니까?

A : 공동격리(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함

Q :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공동격리(코호트)영역에 배치해야 합니까?

A : · 공동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임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함

Q : 공동격리(코호트 격리)해제 기준은?

A : · 확진환자 공동격리(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함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함

제Ⅳ장 주체별 역할

1. 시설운영자의 역할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역할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감염전담 담당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시설 운영자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시 종사자와 이용자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를 총괄함

○ 시설내 감염 예방·관리 총괄

- 시설 내 감염관리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감염병 전담 관리자 지정, 감염병 전담 관리자는 간호사, 의료인, 보건업무 담당자 등 전문의료 교육을 받은 직원을 1순위로 하고, 전문 의료 교육을 받은 직원이 없으면 시설 내 상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직원으로 배치
- 시설 휴관 및 운영재개와 같은 일정관리
- 시설 방문자를 위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요청
- 이용자의 개인 건강/증상 기록, 직원 병가 및 공백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직원이 감염 예방 및 관리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교육기록 보관
- 손 소독제, 비누, 표면 소독제 등 개인과 시설의 위생 유지를 위한 자원관리
- 마스크, 장갑 등의 개인용 보호 장비와 방호복, 고글 등 위급 상황시 보호 장비 확보
- 지정된 격리공간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처리규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ㅇ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감염병 의시자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곧바로 유관기관 보고
- 보건소의 역학조사 협조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시 의사소통 총괄
- 이용자가 외래 진료나 응급실에 가야 할 경우, 동행하는 직원이 시설 정보가 기록된 카드와 환자 신상 정보 카드를 함께 가져가도록 교육·확인

2. 감염병 전담 관리자의 역할

□ 방역관리자의 역할

ㅇ 공동체(사업장·시설 등)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필요시 팀 구성)

- 규모가 큰 경우, 시설 내 부서별, 사업장별로 지정 가능

ㅇ 주요역할은

① 관련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시설의 밀폐도,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공동체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②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종사자·이용자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③ 종사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④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 예시 등 참고하여 시설장에게 개선 요구(시설장이 방역관리자인 경우, 시설장이 개선방안 마련·실행)

⑤ 동일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⑥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평가

- 종사자·이용자·입소자·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등 명단 작성·보관*

* 주소, 연락처, 근무 시간 또는 방문시간 등

ㅇ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선별진료소 이동 방법

-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 기관(시설)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 또는 119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이동, 119 신고 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이용자가 발견되어 선별진료소 이송 원함”을 명확히 전달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 · 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붙임 5)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3. 종사자 보호하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20.1.30. 공문시행)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20.1.29. 공문시행)

□ 종사자 및 대상자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지원 확대

- ㅇ (건강관리책임자) 시설 내 건강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조치 필요
- ㅇ (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 ㅇ (격리시설 마련)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시설(1인실 원칙)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ㅇ (발열체크 등 확인)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및 방문자 등에 대한 체온 측정 및 기록하도록 조치 필요
- ㅇ (시설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특히, 이용시설 운영재개 전 시설별 사전준비사항 점검 실시

- ㅇ (시설휴관)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종사자 관리

- ㅇ 마스크는 종일 착용 (면 마스크 안됨)
- ㅇ 마스크는 코에 밀착되도록 하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림
- ㅇ 모든 종사자 일일 방문 기록지와 증상·징후 등 건강상태 확인
- ㅇ 교대근무 직원을 포함해 시설에 입장한 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 ㅇ 종사자 감염관리수칙 교육 실시
- ㅇ 종사자 간 접촉 최소화와 거리 두기
- ㅇ 시설,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최소화
- ㅇ 종사자별 담당 생활인은 지정하고, 담당 종사자-생활인 이외에는 서로 접촉 최소화

붙임 1. 이용자(종사자) 모니터링 임상증상기록지[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 기록지(시설상황에 맞게 변경사용)

대상자 (소속)	증상		날짜 (/)	날짜 (/)	날짜 (/)	날짜 (/)	날짜 (/)	날짜 (/)	날짜 (/)
	체온	오전							
		오후							
	호흡기증상								
	①기침								
	②인후통								
	③호흡곤란								
	④객담								
	⑤기타								
특이사항									

* 접촉되지 않은 입소자 및 종사자이므로 유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해야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입소자 및 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 기록지

대상자 (소속)	증상		날짜 (/)	날짜 (/)	날짜 (/)	날짜 (/)	날짜 (/)	날짜 (/)	날짜 (/)
	체온	오전							
		오후							
	호흡기증상								
	①기침								
	②인후통								
	③호흡곤란								
	④객담								
	⑤기타								
특이사항									

* 접촉되지 않은 입소자 및 종사자이므로 유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해야함

붙임 2. 다중이용시설등 에어컨 사용수칙[17)]

(1) 일반원칙

- (기본방향) 에어컨 사용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환기)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외부 공기로 환기를 자주하여야 합니다.
- (풍량)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서 사용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실시합니다.
-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하며,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을 실시합니다.
-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 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도록 합니다.
- 기계 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자연환기가 가능하면 병행하도록 합니다.
-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게 하며 바람의 세기는 약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 에어컨의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에어컨 필터는 기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를 실시합니다.
- 에어컨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 합니다.
-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 시설 내의 소독을 자주(최소 일1회 이상)실시하며,
  -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출입관리를 강화 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의 경우,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붙임 3. 방역관리위험도 자가점검표(방역관리 업무안내)[18)]

▌다중이용시설(음식점, 클럽 등 불특정다수 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방역관리자 :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건물 외부 공기로 자연환기가 가능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창문·출입문 통해 일 2회 이상 환기 가능		창문·출입문 통해 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등)	
(밀집도)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이용자간 항상 2m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테이블간, 좌석간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테이블간, 좌석간	
(지속도) 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15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군집도) 시설 내 동시 이용 인원의 규모는?	10명 미만		1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		적극적 침방울발생 (노래, 춤, 격한 운동, 응원등)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정도는? (아래 항목에 V표시)	5개모두 준수 (행정명령시설 6개)		3개이상 준수 (행정명령시설 4개) *마스크,소독은 필수		3개미만 준수 (행정명령시설 4개)	

준수	미준수	방역 수칙 항목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화장실 외,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가?**
		직원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
		이용자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가? (안내문 게시 등)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과 화장실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행정명령 해당시설만)**이용자 명부작성 및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하고 있는가?**

☐ 개선 및 대안

위험도 종합 평가	(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점 이상)

※ 다만, 위험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 평가일·평가시간에 따른 변수 및 평가자에 따른 주관적 요소를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 점검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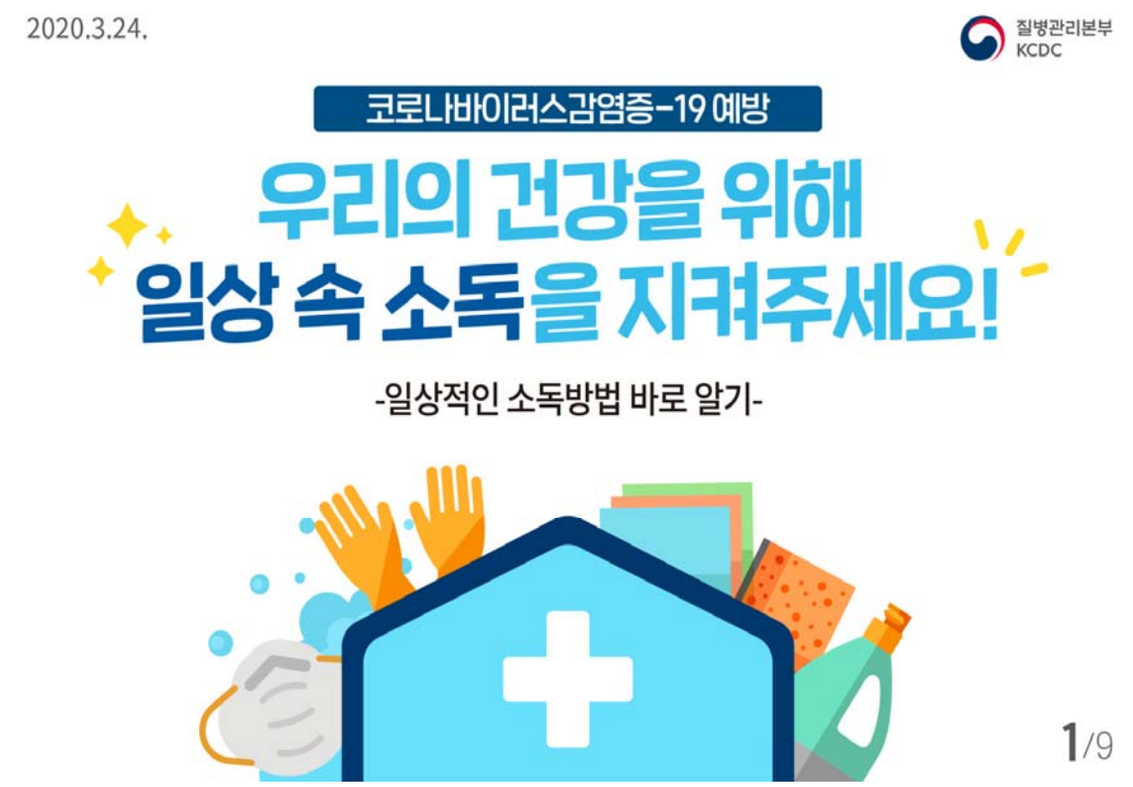
붙임 4.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19)]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 **기 관 명 :**
○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 **확 인 자 :** 직위 / 이름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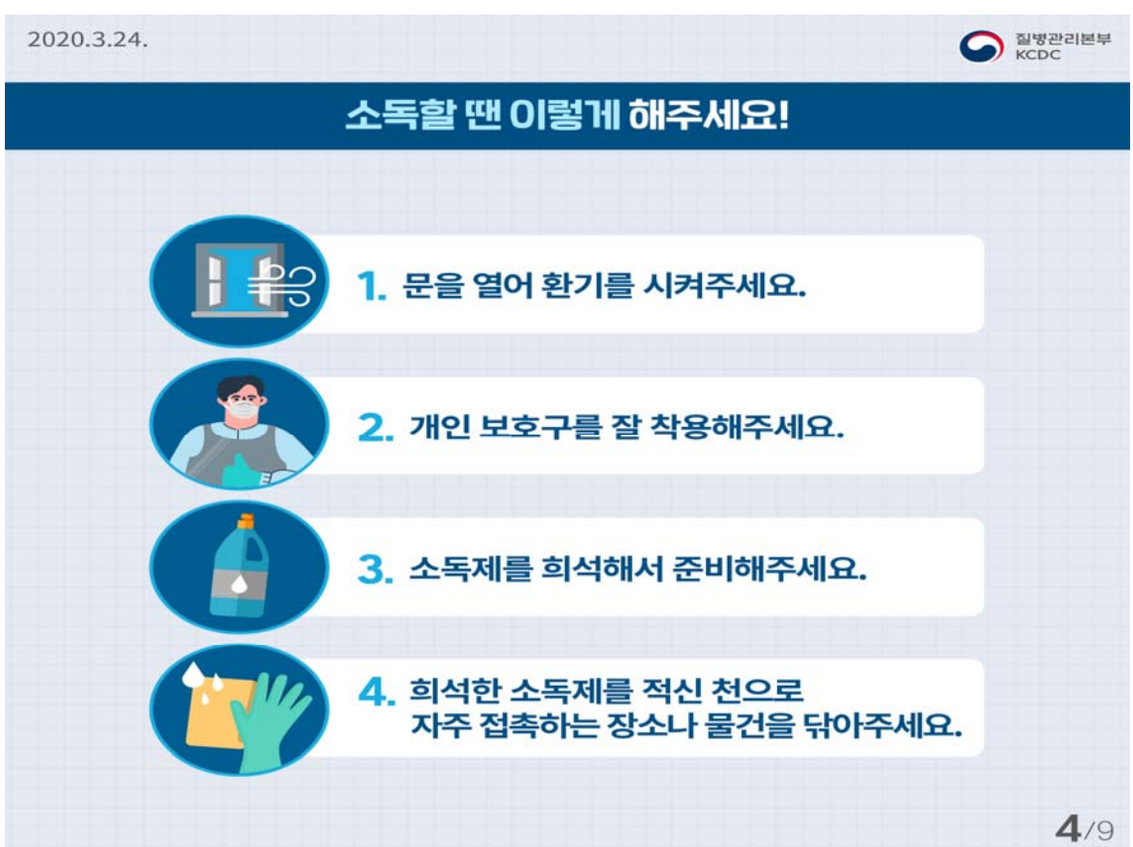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O 표시		비고
		예	아니오	
협력체계(1)				
·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 보건소- 관할 도 및 시군구)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인력 배치 및 관리(10)				
· 건강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직원관리(이용자, 방문객 등) 전담자 지정되었는가				
· 직원(간병인 포함) 명부와 건강상태가 작성 되었는가				
· 모든 직원의 일일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는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				
· 모든 직원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가				
· 모든 직원이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를 상시 착용하고 있는가				
· 직원 동선에 맞춰 개인보호구가 상시 비치되어 있는가				
· 개인보호구를 탈의하고 새롭게 착의하는 장소가 별도 지정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기타 특이사항				

붙임 5. 소독카드뉴스(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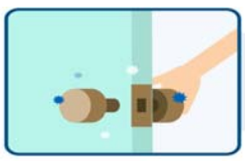

2020.3.24.
질병관리본부 KCDC
청소·소독 전 필수 사항!
개인보호구
일회용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준비물품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
(타올)
폐기물 봉투
갈아입을 옷
3/9


2020.3.24.
질병관리본부 KCDC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1.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2.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3.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4.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4/9

2020.3.24.

질병관리본부 KC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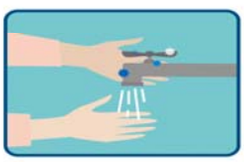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
(예 :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5/9

2020.3.24.

질병관리본부 KCDC



잠깐!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코로나19 홈페이지 소독지침 활용)

6/9

2020.3.24. 질병관리본부 KCDC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5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10ml+찬물990ml(1,000ml까지 채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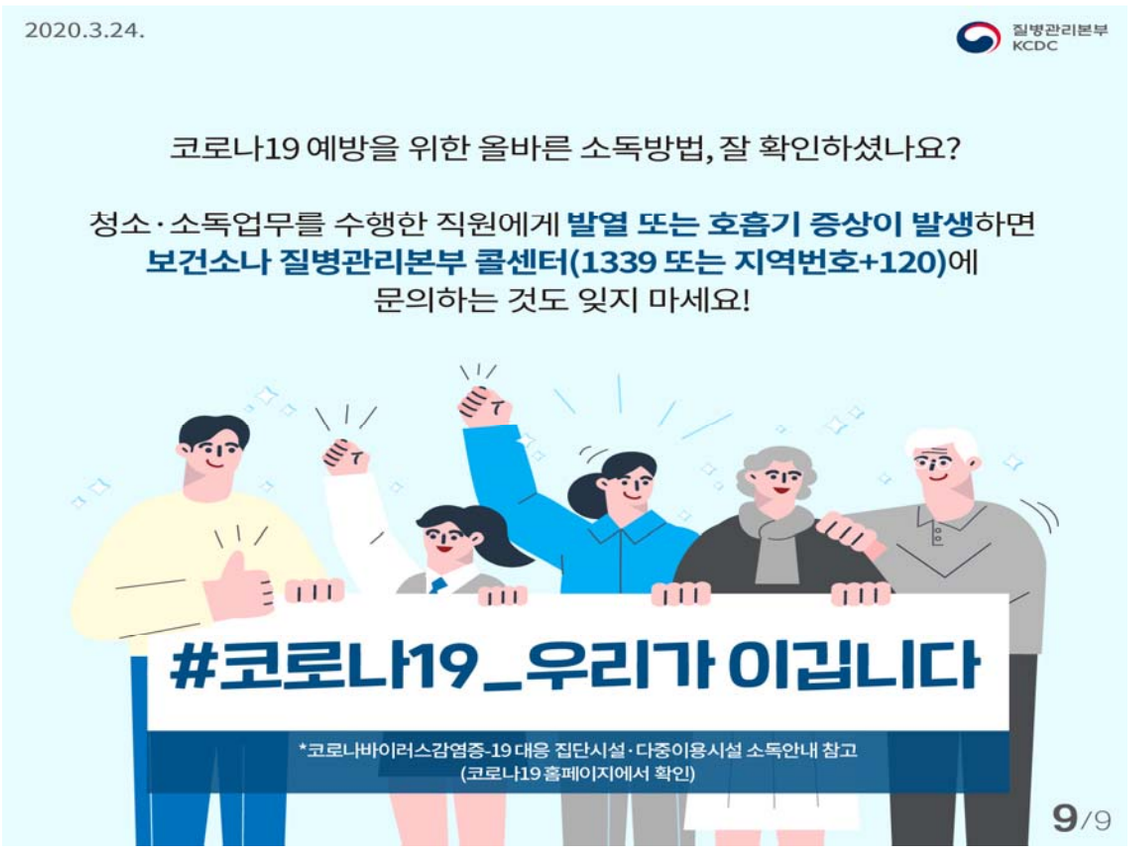
2020.3.24. 질병관리본부 KCDC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8/9


2020.3.24.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 잘 확인하셨나요?
청소·소독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9/9

붙임 6. 사회복지시설 종류[21)]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http://ncov.mohw.go.kr/faqBoardList.do?brdId=3&brdGubun=38 검색일자 2020.9.1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와 조치(2020.6.28.) 및 질병관리본부 [카드뉴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비교(2020.9.8.)를 참조하여 재구성

3) 보건복지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373199&memberNo=31572221)

4) 최성숙(2020).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실천사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2020)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5) 교육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2020. 5.) 유 · 초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2-1판).

6)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7)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6.) 코로나19 대응-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8) 교육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2020. 5.) 유 · 초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2-1판).

9) 국민건강보험공단(2020.2.)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용

10)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6.) 코로나19 대응-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11) 이한나·김유휘(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 대응 및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인천복지재단(2020). 코로나19 상황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안내 지침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추진계획을 재구성

13) 교육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2020. 5.) 유 · 초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2-1판).

14)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 3-4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15) 인천시복지재단(2020) 코로나19 상황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안내 지침서

16) 교육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2020. 5.) 유 · 초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2-1판) 서식2를 재구성

17) 교육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2020. 5.)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2-1판)

18)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 3-4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19) 보건복지부(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5판)

20)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2,2020.9.15.검색)

21)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2020). 2020 생활방역 연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매뉴얼: 생활시설

경기도 사회복지 G-방역+ 운영매뉴얼 - 총괄편 -

발 행 일 2020년 9월
발 행 처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편 집 처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Tel. 1577-4312 Fax 031-898-5937
홈페이지 www.ggwf.gg.go.kr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